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意義와 保險과의 法的, 實際的 關係

金 敬 中

〈業務部 特殊業務課長〉

目 次

- 一. 序 說
- 二. 安全點檢의 意義
- 三.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法的關係
- 四.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實際的關係
- 五. 結 論

一 序 說

人類史는 成長의 努力史와 災難克服의 努力史로 點綴되었다고 하겠다. 災難에 人類가 對處하는 方法은 오늘날 人間의 疾病에 對하여 治療醫學보다 豫防醫學이 重要視되는 것처럼 火災에 있어서도 事後救濟나 鎮壓消防보다도 豫防消防이 더욱 脚光을 받게 되었는데 바 災難을 克服하려는 方法의 變遷은 火災保險業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火災保險의 本來機能은 火災로 因한 損害를 填補해서 經濟生活의 安定을 期하는데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 事後救濟措置에 不過할뿐 社會·經濟的 觀點에서 事前에 火災發生을 豫防하고 또는 發生한 火災를 鎮壓해서 損害發生을 極小化시키는 것이 最善의 方策이라 思料되어 美國과 같은 先進國에서는 「豫防이 第一」(prevention first) 「保險은 第二」(insurance second)를 「못도」로 火災를 未然에 防止하는 것을 最大의 目標로 하는 火災保險團體¹⁾가 登場하기에 이르렀고 特別 保險의 目的의 構造·設備 및 消防施設 等の 改善에 依해서 保險料率 等이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啓發的 料率算定方式이 採擇될 경우에는 火災保險에 依해서 危險의 改善이 促進되며 火災豫防과 損害擴大防止에 도움이 될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하고 迅速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에 對하여 適正한 補償을 하게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制定된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이하 “火保法”이라 한다)은 火災保險의 建設의 啓發的 效用을 制度的으로 誘導하려는 社會經濟政策面을 多分히 內包한 다른 立法例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獨特한 立法인데 이 火保法의 兩大理念 即, 火災豫防手段인 安全點檢(§ 16)과 事後補償手段인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以下 “保險”이라 한다)(§ 5①)의 相關關係에 對하여는 具體的인 明文規定이 없거나 있어도 曖昧하여 火保法의 運營上 어려운 問題中의 하나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바가 아니다.

即, 安全點檢과 保險은 全혀 別個의 無關한 것이 아니라 火災로부터 人間의 不幸을 芟除할 수 있는 「가위의 두 날」과 같은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은 否認할 수 없지만 法的面 또는 實際的 面에서 어떤 關係에 있는가는 그리 簡單한 問題가 아니다.

한편 이러한 兩者의 關係的 問題보다도 先決問題라고 볼 수 있는 特別法인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本質 乃至 具體的 對象等 그 意義가 明白히 論理的으로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印象도 全혀 排除할 수 없다.

勿論 그동안 위와같은 問題點 等에 對하여 安全點檢白書²⁾ 또는 몇編의 論文³⁾이 發表된 바 있으나 大概部分的으로 取扱되었을 뿐 本質的이고 綜合的인 考察에는 未洽한 感이 없지 않다. 이번 號에서는 以上과 같은 문제점 即,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意義를 우선 고찰하고 保險과의 法的·實際的 關係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⁴⁾

二. 安全點檢의 意義

1. 安全點檢 意義의 糾明의 必要性

火災危險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한 關係規制法規는 代表的인 消防法을 위시하여 建築法·高壓가스 安全管理法·電氣事業法 및 熱管理法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國家的 또는 政府의 次元에서 火災危險에 對한 規制를 部分的 또는 全般的으로 具體의 角度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關係法規의 集中的 規制對象이 되고 있는 特殊建物에 對하여 民間의 次元(韓國火災保險協會 이하 “協會”라 한다)에서 火保法上 火災豫防을 爲한 安全點檢을 定期的 또는 隨時로 實施토록 한데는 單純한 關係規制法規執行機關의 一元化라던가, 多元의 으로 分散된 規制基準의 綜合 또는 統一된 觀點에서 危險을 點檢하라는 意味의 特別한 意義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特別한 意義를 糾明한다는 것은 火保法 및 協會存在性의 理論의 基礎요 協會의 未來의 基本業務方向設定에 하나의 指標가 될 것이다. 여기에 火保法上 特別히 規定하고 있는 安全點檢의 意義의 理論의 定立이 功實한 所以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火保法에서는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 11, § 15, § 16)이라고 規定되어 있을뿐 安全點檢의 本質的 意義가 무엇인가는 法에 明示된바 없어 見解가 統一되어 있지 않다.

2. 安全點檢의 本質

가. 本質에 對한 見解

(1) 狹義로 보는 見解

火保法上 安全點檢은 「火災豫防과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害防止 또는 輕減을 爲하여 特殊建物의 狀況·各種消火施設狀況 및 火災危險要素 등을 調査·診斷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 見解에 依하면 火保法上 安全點檢은 火災防止와 損害의 極小化를 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할 것이고, 保險과는 直接的 關聯이 없다는 結論에 이른다. 그 論據를 들면,

첫째, 現在와 같이 安全點檢과 保險을 同一機關에서 取扱하는 것은 火保法이 意圖한 바 아니고, 安全點檢은 協會(§ 11, § 15, § 16) 保險은 損害保險會社에서 取扱케 하였다(§ 5③).

둘째, 火保法은 火災豫防과 火災로 인한 被害復舊를 特殊建物所有者의 自律의 意思에 放任하지 않는다는 것을 規定한 것 뿐이므로, 安全點檢이나 保險이 궁극적으로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한다 하여도 具體의 으로 어떤 關係를 맺어야 할 理由가 없으며, 그 目的達成을 爲한 方法 등은 別個라고 한다.

셋째,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安全點檢에 不應할 수 있으나 (§ 16③) 保險加入은 어떠한 理由가 있더라도 免할 수 없으며 (§ 5①) 또한 損害保險會社도 이를 引受拒絕할 수 있는 例外가 없다는 점 (§ 5③)이다.

(2) 廣義로 보는 見解

火保法上 安全點檢은 「火災豫防과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害防止 또는 輕減은 勿論 保險의 合理的 運營을 爲하여 特殊建物 狀況·各種消火施設狀況 및 火災危險要素 등을 調査·診斷하고 火災危險의 排除를 誘導하는 一連의 行爲」를 말한다고 한다. 이 見解는 이미 摘示한바 있는 火災에 關한 各種規制法規上의 檢査에 對한 火保法上 安全點檢 意義의 獨自性과 固有性을 強調하고 安全點檢과 保險은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 論據를 들면,

첫째, 火保法의 目的 (§ 1)으로 보아 火災로부터 事後 補償을 無視한 事前 豫防策만을 생각하던가, 事前 豫防策을 度外視한 事後補償策만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即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하는데 安全點檢과 保險이 各各 獨立된 狀態에서가 아니라 相互促進 또는 補充허가면서 寄與한다는 것이다.

둘째, 協會는 特殊建物에 對하여 一年中 아무때나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것이 아니라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점은 (§ 16①) 安全點檢이 保險을 意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셋째, 安全點檢의 具體的 對象 即 特殊建物의 構造·配置狀態·各種消火設備狀況 등을 調査·診斷한 結果는 危險의 等級, 利率割引·割引의 科學的 基礎資料가 實際의 으로 된다는 것이다.

나. 結 語

以上 安全點檢 意義를 狹義로 보는 見解는 火保法의 目的中 事後補償手段인 保險에 對한 即 火保法內에서 의 獨自性을 強調하고 火災要素에 對한 危險性의 判斷·調査行爲에 局限시키려는데 反하여 廣義로 보는 見解

는 狹義의 安全點檢에 「保險의 合理的 運營」과 「危險要素의 排除를 誘導하는 一連의 行爲」까지 包含시켜 火災에 對한 各種 規制法規上의 點檢 또는 調査와는 別個인 換言하면 火保法의 對外的 關係에서의 獨自性을 強調하는 面이 있다.

생각컨대 安全點檢과 保險을 各各 別個의 機關에서 取扱케 하였다 하여 安全點檢의 意義를 狹義로 理解하게 된다는 論理는 成立되지 않는다. 現行처럼 安全點檢의 擔當者인 協會는 保險을 引受하는 損害保險會社가 出捐하여 設立한 法人體이기 때문에 (§11) 出捐者即 社員인 損害保險會社는 協會의 最高議決機關인 社員總會를 通하여 安全點檢과 保險의 惹着을 企圖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安全點檢意義를 狹義로 理解 한다면 消防公務員이 關係地域에 出入하여 實施하는 消防檢査(消防法 §5①)와 大同小異하다는 非難을 免키 어려울 것이며, 한편 安全點檢이 單純히 火災豫防과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産被害의 極小化를 위한 것이라면 火災에 對한 各種 規制法規 以上の 基準이나 施設 等を 要求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安全點檢의 本質을 廣義로 理解할 때 安全點檢의 範圍, 基準 및 具體的 對象 등이 關係法規의 테두리를 벗어나 獨自의인 領域 또는 基準의 設定이 가능하고 나아가 火保法上의 安全點檢의 存在意義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리고 火保法上 安全點檢이나 消防法上 消防檢査의 目的이 「火災豫防과 그 火災로부터 人命이나 財産上의 損害를 最少限度로 줄이는데 있다」는 點에서는 本質의 由로 다른 바 없지만 火保法上 安全點檢은 이러한 目的以外 「保險의 合理的 運營」이라는 目的이 包含된다는 點에서 本質의 由로 다른 面이 있다. 6)

3. 安全點檢의 具體的 對象

가. 具體的 對象에 關한 法의 規定

火保法 §11에서 「損害保險會社는……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고, §15 I에서는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을 協會의 業務로 規定하였으며, §16①에서 「協會…保險契約更新時마다 當該 特殊建物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安全點檢의 具體的 對象을 一應 明白히 한 듯 하나

法文上 表現의 未熟과 用語의 混用으로 嚴密한 意味에서 曖昧하고 不分明하다. 即 §16①에 「…當該 特殊建物」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이라고 規定되었는 바, 첫째, 當該 “特殊建物自體”는 安全點檢의 對象에서 除外되고 그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만이 對象이 되는가 문제이다.

생각컨대 建物自體는 施設의 母體가 되어 모든 施設物을 包容하고 있는바 建物自體를 除外한 其他 施設만을 點檢한다는 것은 主客의 顛倒요, 本來意味의 安全點檢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建物의 主要構造部 및 界壁 等 建物自體가 安全點檢의 對象임은 너무 當然하다. 이러한 點에서 §16①을 「…當該 特殊建物과 그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이라고 規定하는 것이 보다 正確한 表現이라 하겠다.

둘째,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意味 또는 範圍가 무엇이나이다. 이에 關하여는 項을 바꾸어 살피고자 한다.

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意味

(1) 「火災豫防을 爲한 消火施設」이라는 見解

이 見解는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이라는 表現自體가 잘못된 것이라는 前提下에 「火災豫防을 爲한 消火施設」이라고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火災豫防」은 安全點檢의 本質 또는 궁극적 目的이지 具體的 對象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한다.

(2) 「火災豫防施設 및 消火施設」이라는 見解

이 文句는 §15Ⅲ의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資料의 調査·研究 및 啓蒙」이라는 文句와는 달리 새겨야 한다고 한다, 即 「및 消火施設」 文句中 「施設」이 「및」이라는 接屬副詞에 依하여 「火災豫防施設」로 새겨게 된다는 것이다. 結局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은 「火災豫防施設 및 消火施設」을 줄인 文句라 한다.

(3) 結語

생각컨대 「火災豫防을 爲한 消火施設」이라는 意味로 본다면 安全點檢의 具體的 對象을 「消火施設」에 局限되는 矛盾이 있다. 예를 들면 「消火施設」이란 概念을 아무리 넓게 새긴다 하더라도 防火門·防火壁·電氣施設 등이 包含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火災豫防施設과 消火施設의 概念 또는 範圍가 火保法·建築法·消防法等 關係法規에 明確히 나타나 있지 않아 그 區別도 解釋에 依存할 수 밖에 없지만 安全點檢의 具體的 對象을 넓게 보려는 두번째의 見解가 妥當하다.

나. 消火施設火災豫防施設

(1) 消火施設

消火施設이라 함은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그를 鎮壓하거나 被害를 極小化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機械·器具 設備로서 이에 屬하는 것으로는 消火設備(消火器 및 簡易消火用具, 屋內消火栓設備, 스프링클러設備,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警報設備, 避難設備, 消火用水設備,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배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중수설비,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들 수 있다(消防法施行令 §12①~⑤).

(2) 火災豫防施設

火災豫防施設이라 함은 火災發生을 防止 또는 制限하는 一切의 機械·器具·施設로서 防火門·防火壁·電氣施設, 各種火器施設이 이에 屬한다.

4. 安全點檢의 舊消防法上意義

이미 摘示한바와 같이 消防法에서는 消防對象物의 位置·構造·設備 等에 對하여 定期的으로 消防檢査를 하게 되었는데(消防法 §5①) 最近改正前 消防法(1981. 4. 4 改正 法律 3413號)에서는 協會에서 火保法 §16에 依據하여 實施하는 安全點檢은 消防檢査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고(舊消防法 §6①) 그 가름할 수 있는 安全點檢의 範圍는 內務部令으로 定하게 하였다(同消防法 §6②).

이는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의 基準等은 消防法規等을 援用하고 있어 消防檢査의 重複이라는 印象을 加급적 止揚하고 協會의 安全點檢의 重要性을 示唆한 點에서는 큰 意義가 있었음은 事實이나, 消防法上 消防檢査機關을 二元化한 感을 全혀 排除할 수 없고 한편 協會의 安全點檢의 制度的 意義가 曖昧하여질 憂慮가 있었다.

따라서 今番 改正消防法에서 消防檢査에 對한 特例條項을 削除한 것은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獨自의 意義를 具顯해나가는데 進一步의 措置였다고 본다. ”

三.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法的關係

1. 火保法側面에서 본 關係

가. 先點檢·後保險의 原則問題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火保法上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直接的 關係에 對하여 明確히 規定한 바 없지만 火保法의 目的에 關한 §1이나 「協會는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當該 特殊建物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고 特約付火災保險加入建物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安全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위와같은 協會의 安全點檢을 拒絶할 수 없다」는 趣旨를 明示한 §16의 規定으로 보아,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16①의 規定이 特殊建物에 對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定한 것이라는 點에 異論이 없으나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時間的 先·後關係 即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을 規定한 것이나에 對하여는 論議가 되고 있다. 이는 單純히 兩者의 時間的 先·後의 問題에 그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論述하는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實際의 關係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者의 時間的 先·後關係를 糾明한다는 것은 適正한 保險引受의 先決條件이 아닌가 한다.

나. 兩者의 時間的 無關係性을 主張하는 見解

이 見解는 安全點檢에 앞서 保險契約를 締結하던 保險契約의 締結前에 安全點檢을 實施하던 兩者는 §16①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的 制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見解에 依하면 安全點檢과 保險과는 最小限 實際的 關係는 別論으로 하더라도 法的으로는 아무런 關係가 없기 때문에 相互拘束도 받지 않게 된다. 그 論據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者는 特殊建物의 所有者가 保險에 加入코자 할 때, 이의 引受를 拒絶할 수 없기 때문에 (§5③) 特殊建物의 所有者가 安全點檢에 對한 受檢을 拒絶하면서도 保險加入만은 하겠다는 경우에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은 貫徹될 수 없다.

둘째, §16① 規定은 單純한 訓示規定이다. 即 保險契約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安全點檢을 實施하도록 한 規定은 保險契約締結에 앞서 가급적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것을 指針方向으로 하라는 意味인 만큼 先點檢·後保險일 必要는 없다.

세째, 保險加入義務期間은 明示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安全點檢의 受檢이나 實施期間은 明示되어 있지 않다 (§5④).

네째,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保險加入을 拒絕하면 認·許可의 取消·營業의 停止, 建物使用의 制限等 一定한 行政的 制裁를 받는 外에 (§7) 경우에 따라서는 處罰도 받게 되는데 反하여 (§23) 正當한 理由없이 安全點檢을 拒否하여도 아무런 制裁規定이 없다.

다섯째,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竣工檢査에 合格한 날 또는 所有權을 取得한 날로부터 30日內에 保險에 加入하여야 하나 安全點檢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이에 不應할 수 있다 (§16③). 따라서 安全點檢을 受檢하지 않았다 하여 自己財産을 火災危險으로부터 保護하려는 保險加入을 拒絕할 수 없다는 것은 先點檢, 後保險의 原則이 維持되기 어렵다. ⑥

여섯째, 保險引受機關과 安全點檢實施機關이 各各 다르다. 現在 兩者는 協會가 擔當하고 있으나 法的으로는 保險은 保險事業者인 損害保險會社 (§5③) 安全點檢은 協會가 取扱토록 되어 있는만큼 (§11, §15, §16)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이 實際維持가 困難하다.

다. 先點檢·後保險 原則의 正當性을 主張하는 見解

이 見解는 安全點檢의 機能이 實際적으로 保險에 미치는 영향과 實定法上的 明文을 重要視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에 앞서 安全點檢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見解이며 그 論據는 다음과 같다.

첫째, 義務保險制度에서는 安全點檢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任意保險制度下에서 보다는 保險商品의 販賣가 보다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計算下에 行하여져야 하며 그러기 爲해서는 安全點檢이 先行되어야만 保險金額決定, 保險料率의 合理的 適用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16①에서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마다...」는 規定은 「...保險契約締結前 또는 保險契約更新 前마다...」라는 意味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기지 않고 安全點檢은 保險契約의 前·後를 不問한다면 굳이 「...保險契約 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고 規定할 必要는 없고, 「協會는 每年 特殊建物の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는 式으로 規定하였을 것이다.

세째,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은 經過措置에 明示되어 있다. 即 1974年 12月 火保法施行令改正時 適用地

域과 工場物件 등이 追加되었는바 施行令 附則③ 經過措置에 「새로 追加되는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1975年 7月 1日부터 1975年 12月 31日까지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을 받고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이와 같이 施行令에서 安全點檢을 받고 保險에 加入토록 한 것은 母法인 §16①의 規定이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을 明示한 것을 前提로 한 것이다.

넷째, 保險의 提害防止面을 重要視해야 한다. 即 安全點檢과 保險의 時間的 先後關係를 無視하는 것은 保險을 단순한 事後補償手段으로 보고 오늘날 先進國에서는 損害保險事業이 財産의 滅失 그 自體를 防止하려는 損害防止의 面을 重要한 一部로 取扱, 이에 傾注하고 있다는 事實을 度外視하고 있다.

다섯째,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을 通하여 安全點檢의 受檢을 기피하는 所有者를 誘導할 수 있다. 保險에 未加入하면 一定한 行政的 制裁와 處罰을 받는데 反해 安全點檢을 拒絕함에는 一定한 制裁가 없어 保險加入은 하겠으나 安全點檢에는 應할 수 없다는 현상이 發生하고 있는바 이는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을 維持함으로써 間接적으로 安全點檢에 應하도록 誘導할 수 있는 것이다. 保險에 依해 安全點檢이 誘導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保險만을 加入하고 實際 特殊建物の 改修 또는 施設의 補完이라는 行政命令이 隨伴되기 쉬운 安全點檢을 기피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 結語(批判)

以上 兩者의 時間的 先·後關係에 對한 論據를 살펴 보았다. 筆者는 兩者의 無關性的 論據가 박약하다고 생각한다. 即,

첫째, 保險者의 引受義務와는 無關하다는 것이다. 保險者의 引受義務規定上 安全點檢을 受檢치 않고 付保하려고 할때 이를 拒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兩者의 無關性的 間接的인 表現이 아닌가하는 것은 不當하다. 왜냐하면 이 規定은 特殊建物の 安全點檢을 實施한 結果 나타난 特殊建物の 火災脆弱性 등을 理由로 保險者가 選擇적으로 保險引受를 決定한다면 火保法의 趣旨는 半減되므로 保險者의 引受義務를 規定한 것 뿐이지 安全點檢도 實施하지 않고 保險을 그대로 引受하라는 意味는 決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保險者의 引受義務規定은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先

點檢을 意識하고 規定한 것이다.

둘째, § 16①의 法規的 性質은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法的 關係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即 本條項이 強行規定 또는 效力規定(Mussvorschrift)이 아니고 訓示規定임은 事實이나 訓示規定이라하여 法에 明文없이 保險契約과는 無關하게 安全點檢을 實施하여도 無妨하다고 볼 수는 없다. 先保險·後點檢이 保險契約自體에는 影響이 없다 하여도 先點檢·後保險이라는 訓示規定에 違反된 것은 否認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安全點檢과 保險引受機關의 同一性 與否가 兩者의 法的 關係를 左右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保險引受機關인 損害保險會社와 安全點檢의 遂行機關인 協會는 法上 分明히 別個의 人格體임은 既述한 바이지만 別個의 人格體가 擔當한다고 하여 安全點檢과 保險引受到 先後가 없다는 主張은 論理의 飛躍이며, 한편 協會는 損害保險會社가 社員社이기 때문에 社員總會를 通하여 어느 程度 兩者의 一致가 가능할 것이다.

가. 原則에 對한 例外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이 維持되려면 不得已 이 例外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即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正當한 理由로서 安全點檢에 不應하는 경우가 있는 바 先點檢이 實施되지 않았다 하여 保險引受를 거절할 수는 없다. 實務上으로 建物を 本來의 用途에 充分히 使用할 수 있는 程度로 構造를 갖추어 火災危險으로부터 保護策이 마련될 必要性이 있으면서 部分的인 工事進行 또는 特殊한 事由로 行政上 竣工檢査를 畢하지 못하였음을 理由로 安全點檢에 不應하거나 實際實施할 수 없는 狀況下에서 付保를 要請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不득이 先保險·後點檢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一定한 條件下에서 先保險·後點檢이 가능하도록 原則에 對한 例外規定이 있어야 할 것이다. 9

2. 商法(約款包含)의 側面에서 본 關係

가. 告知義務와 安全點檢

(1) 告知義務

損害保險會社는 特殊建物の 所有者와 保險契約를 締結함에 있어서 引受條件과 保險料率等の 適用을 爲하여 正確히 危險에 對한 評價가 따라야 하는데 保險契約締結時에 일일이 이러한 것을 調査한다는 것은 事實

上 不可能하다. 따라서 商法이나 火災保險普通約款(以下 “約款”이라 한다)에서는 保險契約者等에게 保險契約締結當時 重要한 事項을 있는 그대로 保險者에게 告知할 義務를 負擔시키고 있다. 即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이義務를 不履行하였을 때에는 一定期間內에 保險者는 保險金 支給의 責任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商法 § 651, § 655), 여기에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關係에 對한 또 다른 側面이 있다.

(2) 告知義務免除與否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告知義務(disclosure and representation)는 保險者가 個個의 保險의 目的에 對한 危險率等을 調査할 수 없기 때문에 保險契約者等에게 重要한 事實을 그대로 告知토록 한 것이므로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은 保險契約者 等の 告知義務를 免除시키는 意味가 있는가에 對하여 見解가 對立될 수 있다.

첫째, 現行과 같이 損害保險會社가 設立한 協會로 하여금 保險引受 前에 特殊建物の 構造·火災危險性等을 充分히 點檢한 結果를 基礎로 保險契約를 締結케 한다면 保險契約者 等이 危險發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지도 모르는 事項을 保險契約締結前에 알린다는 告知義務는 別意味가 없으며, 義務保險에 對한 沒理解 또는 抵抗感에서 他律的으로 保險契約에 臨하는 保險契約者 等으로부터 告知義務의 誠實한 履行을 期待한다는 것이 無理하다고 한다.

둘째,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은 法的으로는 火災發生原因을 發見하여 이를 除去하고 이에 對한 注意를 喚氣시킴으로써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目的으로 實施하는 것이므로 설명 安全點檢實施를 通하여 危險判斷의 資料 乃至 具體의 危險要素를 知悉하였다 하여도 이는 保險契約者 等の 告知義務에 基礎한 告知와는 別個의 것이므로 保險契約締結時에서 安全點檢과는 別途로 告知義務를 負擔한다고 한다.

(3) 結語

생각컨대 告知義務는 保險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알고 있는 事實을 똑같이 알아 그 危險選擇을 하여 多數의 保險契約者를 前提로 하는 保險團體에서 不良한 危險을 排除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保險契約 밖에서 認定되는 特殊한 義務라는 點¹⁰⁾과 複雜多樣한 各種危險要素를 制限된 人力과 制限된 時間內에

實施하는 安全點檢에서 精密하게 測定한다는 것은 容易하지 않기 때문에 保險契約者의 信義誠實性은 如前히 要請된다는 점에서 볼 때, 告知義務는 免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安全點檢에 나타난 事實에 對하여는 保險契約者等이 保險者에게 不告知하였다더라도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것에 該當하는 것으로 保險者의 契約解止權은 排制된다고 보는 것이 妥하다(商法 § 651).

나. 通知義務와 安全點檢

(1) 通知義務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保險者가 引受한 危險을 任意로 變更 또는 增加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維持시켜야 할 이른바 危險維持義務(Gefahrstandspflicht)을 負擔함은 勿論(商法 § 653) 保險期間中에 事故發生 危險이 顯著하게 變更 또는 增加한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書面으로 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商法 § 652, 約款 6①) 保險者는 이에 따른 所定の 保險料를 徵求하거나 還拂한다(約款 6②). 萬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러한 通知義務를 不履行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를 解止할 수 있는 것이다(商法 § 652). 이러한 通知義務는 保險契約者 等에게 保險者의 合理的인 保險運營의 基礎資料를 提示하여 주고 이에 協力할 것을 要求하는데 있는 것이며 保險政策的인 面과 公益性을 考慮한 것이다.¹¹⁾

(2) 通知義務免除與否

協會는 保險契約締結後에도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保險의 目的에 安全點檢을 實施할 수 있는 바(§ 16 ②) 所有者의 要請이 있어 危險變更에 對한 安全點檢을 하였을 때 保險契約者 等の 通知義務를 履行한 것으로 보아도 無理가 없을 것이나, 協會가 必要하다고 스스로 判斷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한 結果 危險變更이 있음을 知悉한 경우라면 保險契約者 等の 危險變更通知義務는 免除되는가 아니면 이 경우에도 別途의 變更通知가 있어야 하는가? 또한 先點檢·後保險의 原則上 更新契約의 경우 安全點檢과 保險契約 締結의 時差로 安全點檢時에 知悉한 危險變更事實이 殘餘保險期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問題도 다른아닌 保險契約者 等の 危險變更通知義務와 關聯된 것이다.

이에 對하여 保險加入의 義務性과 「保險者는 언제든지 保險의 目的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建物이나 構內를 調査할 수 있다」는 約款(約款 19)의 規定趣旨上 保險의 目的의 危險變更이 반드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通知에 依해서 保險者가 알 必要는 없다는 見地에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通知義務는 免除된다고 主張하는 立場도 있다. 이에 따르면 保險者는 當然히 約款 6②에 規定된대로 保險料를 追徵하거나 還拂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데 아무리 義務保險이라 하여도 保險契約者等이 遵守하여야 할 義務自體가 輕減되거나 免除된다는 論理는 成立될 수 없으므로 商法 또는 約款上의 各種義務는 變動이 없다 할 것이며, 萬一 위와같이 通知義務가 免除되는 것으로 본다면 保險契約의 善意性과 信義誠實의 原則을 저버리고 不誠實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護받게 되는 경우도 發生될 수 있어 不當하다.

따라서 保險者가 保險期間中에 保險의 目的의 危險變更을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要請에 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安全點檢을 實施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는 危險減少에 따른 保險料의 追徵이나 保險契約를 解止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四. 安全點檢과 保險의 實際的 關係

安全點檢의 本質을 廣義로 理解한다면 保險은 安全點檢結果의 영향을 받는 것은 自明하다. 그러면 安全點檢結果가 保險에 무엇을 어느程度 미치는가 卽 安全點檢의 保險에 對한 機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適正한 保險金額評價

特殊建物の 保險金額은 時價에 依한다(§ 8①). 保險의 特殊性(義務保險性)으로 보아 時價 卽 保險金額은 適正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建築構造의 多樣化 建築資材의 多種化는 勿論 特히 機械나 設備의 複雜化로 비록 時價의 評價基準이 火保法施行規則에 規定되어 있지만 實際 適正하게 保險金額을 策定한다는 것은 容易하지 않으며 이를 評價適用하는에는 莫大한 時間과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安全點檢結果에 依하여 時價를 評價·適用하는 것이 더욱 經濟性과 適正性을 期할 수 있다.

2. 適正한 料率策定

保險事業者의 收支와 特殊建物所有者의 負擔에 重要하고도 決定적인 作用을 하는 料率의 適用에 있어서도 自由料率 또는 協定料率制度이던 不問하고 素朴한 經驗만으로 無原則하게 運營될 수는 없다. 保險金額의 策定처럼 特殊建物の 構造 級數·用途·生産工程·生産施設 危險品의 收容 및 建物の 面積등에 依하여 그 基本料率의 割引·割増料率이 決定·適用될 것이므로 이에 專門의이고 高度의 技術의 調査와 檢討 即安全點檢結果가 基礎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最大豫想損失把握

原保險者나 再保險者가 自己保有額 即 出再比率를 決定하기 爲해서는 火災危險度의 判斷을 通한 最大豫想損失을 把握해야 하는데 이때 安全點檢이 必要한 것은 말할것도 없다.

4. 適正한 損害査定에 寄與

安全點檢을 終了한 物件에 對하여 特殊建物の 圖面·作業工程圖·機械配置圖 및 建物の 建築史 등이 作成 또는 記錄保存된다면 罹災發生時 그 原因調査 또는 損害査定의 適正化를 보다 더 期할 수 있을 것이다.

五. 結 論

以上 火保法上 規定을 主로하여 安全點檢의 本質과 保險과의 關係를 皮相的으로 考察해 보았다. 이는 安全點檢과 保險이 相互補完·融合의 關係에서 火保法의 基本目的을 達成해 나가는 過程에 냉철히 窺어 보아야 할 課題中의 하나이며, 筆者는 本稿를 通하여 問題의 一部를 解明하였다기 보다 提起한 것에 不過하다.

끝으로 安全點檢의 本質의 目的이 「火災豫防과 火災로 인한 被害의 極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保險의

合理的 運營」도 同時에 追求하는 安全點檢의 本質의 目的을 再強調하는 바이며 保險契約을 更新하지않는 特殊建物에 對하여 每年 安全點檢을 實施할 理由가 없다는 異論이 擡頭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하겠다.

1) 代表的인 例로서 Factory Mutual과 Factory Insurance Association을 들 수 있다.

2) 韓國火災保險協會 發行 1977. 5. 1

3) 梁承圭 “火災豫防을 爲한 安全點檢과 保險의 函數” 火災 安全點檢 第5號.

郭大濟 “安全點檢과 保險” 火災安全點檢 第6號.

4) 本論文은 80年度 自體研修用으로 作成된 講義案을 大幅 補完한 것이다.

5) 火災豫防 또는 安全點檢機關이 現在多元化되었다는 말 을 種種 듣는다. 이는 協會 또는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의 存在的 意義와도 密接히 關聯된 말이다. 따라서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獨自의 意義(特異性과 效用性)를 보다 鮮明하고 確固히 定立하며, 火災豫防等을 爲한 安全點檢領域에 있어서 보다 先導的이고 牽引車의 役割을 할 수 있는 方案이 活潑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火保法上 安全點檢의 本質은 「保險會社나 機關에서 危險을 選擇하고 危險의 程度를 正確히 評價하여 그 危險의 引受與否를 決定하고 만약 危險을 引受하게 될 경우에는 格當한 保險料率을 賦課하기 爲하여 調査」하는 underwriting survey 그 自體가 아니라, 그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7) 消防檢査의 特例條項이 認定되면서 부터 消防法施行令·同法施行規則 및 安全點檢運營 및 結果措置에 關한 業務規程(內務部訓令 第610號)에 協會의 安全點檢에 關한 規制條項이 規定되었다. 特例條項의 削除에 따라 이들 條項에 대한 再檢討가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8) 實務上 未竣工物件에 對하여 財産管理上 또는 金融貸出과 關聯 緊急하게 保險加入을 要請해 오는 경우가 種種 있다.

9) 火保法上 安全點檢과 保險의 法的 關係가 先點檢·後保險의 原則으로 나타나다면 安全點檢의 保險에 對한 拘束性即 保險은 原則的으로 당연히 安全點檢을 基礎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安全點檢의 本質을 廣義로 理解할 때 더욱 自明하다.

또한 保險의 引受條件도 安全點檢基準에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10) 保紛審判 1978. 12. 21. 78-37

11) 徐燦珩 外 2人共著 註譯新商法通覽 p. 883

<끝>